

분단국가간 통합에 따른 법적과제

독일통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오토 데펜호이어 (Prof. Dr. Otto Depenheuer)

(킬른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1. 통일의 과제
2. 국제법에 의한 통일의 시간 요소
3. 경제법 및 사회법 차원에서의 통일 준비
4. 헌법에 의한 통일 구성
5. 내적 통일을 향한 힘든 길

1. 통일의 과제

독일의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닥쳐왔다. 1989년 11월 9일 전, 다시 말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까지 어떤 준비도 계획도, 그리고 통일이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해 빚어질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구상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실제로 통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했으며, 수십 년간 분단되었던 국가가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법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정신적인 측면의 문제가 그것이다. 필자는 그 중에서 (되돌아 보건데 근본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할만한) 법적인 측면에서의 통일 문제 극복에 대해서만 논하고자 한다. 경제적 측면의 경우 공산체제가 남긴 부담은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컸다. 당시 사람들은 통일의 비용을 주머니돈으로 가볍게 치러낼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정신적

측면에서 볼 때 “마음 속”의 통일은 아주 천천히, 수많은 고통스러운 현상을 동반하면서 완성되고 있다. 점차적으로 공동의 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목표를 세우면서 공동의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해나가야 한다. 분단된 민족이 걸어온 서로 다른 정체성의 역사가 다시 하나로 합해지려면 한 세대는 흘러야 할 것이다.

통일이 수반한 법적 문제는 그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체계화가 가능하다. 우선 통일을 국제법상으로 확실히 할 필요가 있었다(2장). 그리고 나서는 경제 및 사회적 측면에서 통일을 준비하고(3장), 헌법상으로 구성한 후(4장) 최종적으로 정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 속에 통일이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었다(5장).

2. 국제법에 의한 통일의 시간 요소

통일의 완성에 있어서 시간 요소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당시 헬무트 콜 총리의 “10개항 계획”이 발표되기까지 3주의 시간이 흘렀다. 그로부터 10주 후 소위 “2+4” 협상이 마무리되었고, 화폐 및 경제통합조약이 체결되기까지 다시 12주의 시간이 흘렀다. 그 시점으로부터 통일조약이 성사되는데 다시 14주의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2주 후 “2+4” 조약이 체결되었다. 정치적 사안에서 시간 요인이 그토록 지배적 역할을 했던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정치 혁명이 초고속영사기처럼 돌아간 것이다. 국내정치 및 대외정치적 현안의 해결책에 대한 시간압박은 계속해서 높아져갔다. 1990년 여름이 시작되면서부터 통일로 향한 열차는 점점 더 가속도가 거세지는 엄청난 발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 때 정치적 측면에서 중요했던 것은 대외정치적 2+4 협상의 과정을 국내정치의 발전 속도와 어떻게 발맞추어 나가도록 만드느냐 였다. 왜냐하면 국내 상황은 계속 대외정치적 협상의 성공여부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2+4” 조약의 체결과 10월 3일 통일의 날의 일치는 이 복잡한 과정에 참여했던 모든 당사자들에게 빛나는 업적이 아닐 수 없었다. 정치, 외교, 공무원 그리고 특히 국민들이 이뤄낸 역사였다. 결국 내적 통일 뿐만 아니라 외적 통일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보였으며, 모든 행동의 필연적 귀결로 여겨지게 되었다.

독일 통일이 뚫고 지나가야 하는 시간의 창문은 매우 작았다. 그런 만큼 통일 과정이 완성되어야 하는 시간압박은 엄청났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통일을 원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시간압박을 따르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 따라서 너무 성급하고 빠른 행동을 취했다며 당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것은 부적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독일이 조금만 망설였더라도 통일을 위태롭게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1989년 12월에 발표한 헬무트 콜 총리의 “10개항 계획”과 함께 독일의 통일은 3단계를 통해 완성되었다. 경제, 통화 및 사회 통합에 관한 조약, 2+4 조약 그리고 통일 조약이 그것이다. 모든 조약은 단 몇 주 만에 협상되었다. 모든 협상의 과정에서 동독은 동등한 협상파트너로 참여했다. 물론 계속되는 동독정권의 몰락으로 협상에서 동독의 입지가 날로 약화되기는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은 예를 들어 약간의 양보만으로 동독 마르크의 서독 마르크화 교환비율을 1:1로 관철시킬 수 있었다. 통일조약에 대한 협상에서는 1945년부터 1949년 사이에 이루어진 사유재산 몰수 유효기간과 같은 문제 등에서 동독이 원하는 바가 전반적으로 수용되었다. 폴란드와의 국경문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3. 경제법 및 사회법 차원에서의 통일 준비

분단된 양 독일이 헌법상으로 통일되기 전에 서독과 동독 간에 경제, 화폐 및 사회 통합 조약의 체결로 공동의 법적 토대가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이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동독은 서독의 경제체제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당시에는 양 독일이 통일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언제 통일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다. 신속한 흡수통일에 대한 (특히 소련의) 반대의견 때문에 일종의 “되돌릴수 없는 지점 (point of no return)”을 명확히 하고 통일에 장애가 되는 변화를 차단하는 의미있는 틀이 마련되어야 했다. 화폐, 경제 및 사회 통합을 위한 조약은 양 독일의 연방제적 통합(Föderation)으로 가는 도중의 통과역으로서 구상된 것이었다. 경제 및 화폐 통합은 통일미래에 대한 대략적 형태임을 자부하고 있을 때, 한편에서 이후 단 3개월 반 만에 이뤄진 통일조약은 허약한 기본법의 법질서속으로 빠르게 이행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합의사항을 도출해내고 있었다. 화폐,

경제 및 사회 통합에 관한 조약은 처음에는 연방제적 통합을 이루기 전에 더 오랜기간 지속될 국가연합체적(konföderale) 사전단계로 구상된 것이었다. 이러한 정신은 조약의 서문에도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조약은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국가적 통합의 완성이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경제 및 사회통합은 내적 통일과정을 구현한 것이었고, 이는 당시에 동시에 진행되고 있던 대외정치적 과정(2+4 협상)을 고려했던 것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동독이 연방제구조를 구축할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시간계획은 점점 짧아져서 처음에는 1993년으로 계획되었다가 1992년으로 그리고 1991년으로 줄어들었다.

조약의 핵심인 화폐통합은 1990년 7월 1일에 시작되었다. 화폐통합은 서독 마르크화를 동독 화폐로 도입하면서 단일 화폐 지역을 구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약 제1조 제2항). 동독 주민들이 서독의 화폐를 일찍 받아들이도록 한 것은 동독주민의 서독 이주 러시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였다. 화폐통합은 사회적 시장경제를 토대로 한 경제통합 및 사회통합을 통해 확보되었다 (조약 제1조 제3항). 조약의 실행을 위해 공동통치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것이 최초로 마련된 공동의 연방제 조직이었다.

특히 통일기금을 설치한 것은 독일 통일의 재원 마련을 위한 핵심 기능을 수행하였다 (통일조약 제31조). 당시 동독의 드메지에르 정부가 힘겹게 얻어낸 조약의 사회정책적 골자는 예치금, 임금, 연금 등을 동독 마르크에서 서독 마르크화로 교환하는 비율이었다. 서독의 금융전문가들은 1:1 교환비율에 대해 긴급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비록 1:1 교환비율을 전반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피할 수 있었지만 통일조약 제10조 제5항은 1990년 7월 1일자로 임금, 급여, 연금, 장학금, 집세 및 임대료에서 1:1의 교환비율을 명시하기에 이른다. 그 밖의 모든 미지급금 및 부채는 2:1의 비율로 교환되었다. 이는 “소액 저축자”를 우대하는 정책으로 동독 주민 대다수에게 해당되는 것이었다. 구동독 사회보험기관에 대한 엄청난 원조 외에도 서독의 일반적인 재정할당액은 1990년 하반기에 220억 마르크, 1991년에는 350억 마르크에 달했다. 통합조약을 위한 조약법은 1990년 7월 25일에 제정되었다. 이는 특히 화폐통합의 차원에서 연방은행의 권한을 규정하였는데, 사회보험법

에서 특별규정을 마련한 것이었다.

화폐통합은 정치적, 심리적 측면에서 볼 때 올바른 조치였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구동독 경제 재건을 위해 매우 위험한 결정이기도 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조급함, 서독으로 이주할 위협과 국제적 상황 등은 결론적으로 모든 경제적 의구심을 압도했다. 통일의 정치적 중요성은 경제적으로 그만큼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일로 인한 사회적 후속비용은 거의 예측이 불가능했다. 동독이 존속했다 하더라도 엄청난 속도로 증가한 실업은 몰락한 경제구조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며, 붕괴된 사회보장체제를 일으켜 세우는 것도 오로지 서독의 몫이었을 것이다. 1990년 7월 1일, 주민들이 기대와 설레임 속에 마르크화로 물건을 구입하기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독일의 통일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4. 헌법에 의한 통일 구성

독일 통일로 가는 두 가지의 길을 기본법은 이미 제시하고 있었다. 기본법 제23조는 연방주들의 편입을 통해 통일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고, 기본법 제146조는 분단된 양 독일이 새로운 헌법의 토대 위에 하나로 합해지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새 헌법은 전체 독일 국민의 투표로 정한다고 적고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1990년 초 열띤 공방을 불러일으켰다.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연방주 편입에 의한 통일의 경우 이미 선례가 있었는데, 자알란트 연방주가 1957년 서독에 편입된 사실이 있었다. 이것은 계속되는 엄청난 시간 압박을 고려할 때 보다 신속하고 간단한 방법처럼 보였다. 1990년 초와 여름에 독일 통일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대외정치적 상황은 당시 언제 어떻게 바뀔 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다. 게다가 서독으로의 이주 물결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였다. 동독 정당들과 - 여론 조사에 따르면 - 주민들의 대다수도 갈수록 빠른 통일을 원했고 이로서 기본법 제23조의 길을 가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기본법은 이미 서독에서 성공적으로 그 효능을 입증했기 때문에 동독 시민들에게 (개혁운동 세력에게도) 매력을 발하고 있었다 기본법은 성숙하고 일정한 방식으로 형성된 법체계를 보증하는 것으로서 대내외적으

로 법적 안정성을 주었다. 양 독일 국가의 합병, 즉 독일에 새로운 국가 형태를 요구했을 지도 모르는 기본법 제146조의 방식을 적용하는데 대해서는 헌법 제정을 위한 국회가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했을 경우 동독 주민들이 서독 주민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헌법을 마련하고 새 헌법을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1990년 초에는 그렇게 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1990년 10월 3일,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동독이 서독에 편입됨으로써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엔이 서독의 연방주로 편입되었다(통일조약 제1조 제1항 제1문). 연방주의 구성 및 경계에 대해서는 통일조약 별첨 II에 따라 1990년 7월 22일자 연방주도입법이 계속해서 적용되었다. 통일조약 제1조 제2항에 따라 23개의 동베를린 및 서베를린의 구역들이 하나의 연방주로서 베를린을 구성했다. 연방주의 편입과 함께 통일조약 제3조에 따라 기본법은 (통일조약 제4조에 의해 개정된 판으로) 신연방주들과 동베를린에서 효력을 발생했다.

통일조약의 협상과 체결은 헌법상의 마지막 장애물이었다. 물론 통일조약이 동독의 편입에 본질적인 것은 아니었다. 구동독 인민회의는 이미 1990년 8월 23일자 의결로써 편입을 공포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조약의 체결로써 통일은 마침내 법적으로 성취되었다. 독일 통일과정에서 마련된 이 조약은 광범위한 별첨의 내용으로 인해 거의 최대 규모의 법규집이 되었으며, 경제, 화폐 통합에 관한 조약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는 국제법상의 조약이지만 내용면에서 볼 때는 헌법상의 조약이었다. 대부분 쟁점이 되는 문제는 정부 의사록에 등재되었으며, 몇 가지는 제외되기도 했다. 조약은 전체적인 부처의 담당부서 실무그룹들이 양 독일 내무부의 주관 하에 본과 동베를린에서 번갈아 가며 회의를 개최하여 약 3개월 만에 이뤄냈으며, 양 독일 정부가 8월 31일에 서명하였다. 이 시점에 사민당(SPD)은 이미 정부 연정에서 탈퇴하였다. 후에 자주 세간에 오르내린 것과는 달리 동독의 협상 대표단은 서독 대표단에게 압도당하는 느낌을 갖지는 않았다. 대부분 동독의 대표단은 서독 측이 예상한 것보다 서독의 법규를 오히려 더 많이 수용하고자 했다. 9월 23일, 통일 되기 10일 전에, 통일조약을 위한 조약법이 마련되었고, 9월 29일에

는 마침내 조약이 발효되었다. 통일조약은 9개 장에 4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서록과 3개의 별첨이 첨부되어 있다. 그 광범위한 영향력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짧은 이 조약에서(조약은 별첨 I과 II를 통해 규모가 광범위해졌다) 양 독일은 “독일의 통일을 평화와 자유로운 자결 속에 완성한다”는 자신들의 의지를 확고히 다졌다. 이것은 기본법의 서문을 인용한 것이다. 5개 신연방주의 편입에 관한 규칙과 베를린에 대한 특별규정 외에도(통일조약 제1조) 통일조약의 제2조 제1항은 베를린을 독일의 수도로 규정하고 있다. 연방정부청사 및 연방하원의 이전에 대한 추후의 결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상 보다 더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독일 통일의 날”을 10월 3일로 정하여 공휴일로 제정한 것(통일조약 제2조 제2항)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 날은 사실 다만 행정적 작업이 완수되었을 뿐, 역사적으로 축하해야 할 의미있는 요소는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다른 날들, 특히 열광적 감정으로 충만한 장벽이 무너지던 11월 9일이 훨씬 더 공휴일로 제정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이었다. 베를린 제국의사당 앞에서 치러진 통일의식은 엄숙하고 감동적인 국가행위였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날은 지난 수개월간 국내외적으로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친 경사스러운 종착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전체적인 법적 및 사회 체계가 서독의 시스템으로 이행하고, 서독 체계로 통합되고, 신연방주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일 등, 조약을 체결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부족했는지와 엄청나게 방대한 법적 재료의 복잡다단함을 고려하면, (어쩌면 불가피했을) 많은 결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이 최고의 법적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독일의 관계당국이 성취해낸 업적이기도 했다. 통일조약과 함께 입법적 측면에서도 (그 영향력과 질적인 면에서 볼 때) 민법전, 바이마르 제국헌법, 기본법 또는 1945년 이후 전쟁피난민 통합을 위한 부담조정법 등과 같은 지난 세기의 성과와 비견할 만한 업적이 나온 것이다. 통일조약이 없었다면 신연방주는 초기에 법적, 조직적 혼란을 실제 훨씬 더 크게 겪어야 했을 것이다.

통일의 길은 새 헌법을 요구하지 않았고 기본법에 의한 법적 매커니즘 속에 모습을 드러냈다. 기본법은 이제 구동독 지역에도 유효한 법이 되었다. 동독 주민들은 새 헌법을

투표로 결정하거나 기본법에 대한 동의를 특별한 행동으로 표명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1990년 12월 2일에 실시된 총선에서 동독주민들은 암묵적으로 기본법에 대해 투표를 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 기본법의 개정과 미래 독일 헌법안을 작성하는 일은 격렬했을 직접적 통일과정을 비껴나가게 했고, 그것을 이후로 유보시켰다. 3년이 지난 후 1994년 10월 27일에야 비로소 연방하원 및 연방상원에 의해 공동헌법위원회의 제안들 중 일부가 기본법에 수용되었다. 기본법은 특히 여성의 동등권 보장, 국가목표로서 “환경보호” 명시 및 연방주들의 (특히 유럽 통합 문제에 있어서) 헌법적 상황 개선을 위한 규정 등이 보충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린 편입에 관한 기본법 제23조는 유럽통합의 절차를 다룰 새로운 법적 내용을 갖추게 되었다. 물론 포괄적인 헌법의 전반적 개정이나 완전히 새로운 “전체 독일의 헌법”을 기대했던 사람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이기도 했다.

법체계가 신연방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과제는 (그 복잡다단함을 고려할 때 최대한 가능한 범주 내에서) 법적 안정성을 구축하는 일이었다. 이것은 매우 정교한 법적 결합을 통해 이루어졌다. 너무 오랫동안 서로 동떨어진 법적 영역이 남아 있어서도 안 되고 서독의 법이 일률적으로 동독사람들에게 덮어씌워져도 안 되었다. 따라서 규칙과 예외의 체계를 통한 결합, 경과기간 및 지속성의 보장과 같은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신연방주의 주민들은 1990년 10월 3일 이후로는 아무런 제약도 없이 새로운 전체 독일의 법적 영향권 하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처럼 여러 단계를 통한 법체계의 이전 및 적용 과정을 통해 신연방주의 주민들은 제대로 기능하는,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들의 특별한 요구에 맞춘 법체계와 만날 수 있었다. 연방주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신연방주에 기본법에 의한 독립적인 법적 기관들을 신속하게 구축함으로써 주민들이 새롭게 구성된 검찰과의 협력 하에 곧바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새 연방주법의 공포는 불과 5년 내에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그 때까지 유효했던 구동독의 법은 독자적 연방주법으로 대체되었다.

5. 내적 통일을 향한 힘든 길

통일이 국내 정치에 미친 영향에는 구동독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구서독 수준에 맞추려는 노력도 포함된다. 이것은 통일 후 16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몇 가지 양보를 통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출산율 하락과 이주의 물결로 인해 계획성 있는 이주에 관한 논의가 서독보다 동독 지역에서 더욱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대외정치적으로 통일은 변화된 전체 독일 국민의 정체성(자기이해)에 영향을 미쳤다. 자기중심적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종식되면서 다른 세계를 향한 시야에 걸림돌이 없어졌다. 이와 함께 독일은 전쟁 이후 깊어졌던 짐에서 해방되었다. 바르샤바조약과 상호원조위원회의 해체, 독립국가연합과 새로운 유럽의 작은 국가들의 형성, 마스트리히트 조약 등은 다시금 새로운 의무를 지우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기도 했다. 동유럽에 대해서 독일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성공적 모델을 구현하는 국가였다.

재정적 부담과 청산 업무의 규모는 초기에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다. 통일의 완수는 국가적 과제라기 보다는 일차적으로 관료작기술적 차원의 문제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견해 때문에 시민들은 독일 통일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공동의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 만일 시민들이 공익적 사명감이 있었다면 훨씬 더 많은 전문가 자원봉사자와 자문가가 나섰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간 자매결연 등을 통해 선의에 의한 성과들이 나왔다. 또한 신연방주의 경제적 실체와 특히 문화적 자산은 40년의 분단이 종식된 후 초기에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기본법의 자유로운 모델은 국가가 제시하는 평등과 사회 보장의 모델에 길들여져 있었던 신연방주 주민들에게 일종의 “체제 시험”이 되었다. 기본법은 이 시험을 통과했고 자유로운 질서가 받아들여졌다. 물론 희생도 없지 않았으며, 이러한 희생은 - 사회적 성격을 띠는 - 시장경제와 또한 세계화된 경제의 불확실성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했다. 구동독에서 주민들에게 깊이 각인된 안정에 대한 욕구는 종종 과도한 요구와 조급함, 낮은 시

민 의식과 책임 회피, 자발적 행동의 결여, 그리고 자유에 대한 두려움 등의 모습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낮게 책정되었다가 단계적으로 인상되었던 임금, 부동산 소유권 반환요구 및 서독인들이 관공서 및 기업체에서 고위급을 대거 차지한 것 등으로 인해 불만이 야기되었다. 구동독 지역의 경우 성장의 노력을 경주하는 지역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몰락한 지역도 있다. 낮은 생산성, 그에 비해 높은 임금수준과 보조금에 의존하려는 자세 등은 서독과 생활수준을 평준화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중산층이 서서히 재건되고 있다.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창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 경제적 무능력이나 초기 자본 결핍으로 파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여전히 높은 실업률로 인해 특히 젊은 층의 서독지역 이주가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출산을 감소, 탈농촌 현상, 특히 젊은 층의 정치적 극단주의와 외국인 적대감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역적 차이를 전체적으로 인정하는 독일의 연방제 재정조정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면서 신연방주가 소위 “메초조르노(Mezzogiorno)¹”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지는 않다. (끝)

¹경제적으로 낙후된 이탈리아 남부지역